

# 전자출판의 미래 가로막는 정보 도둑

## 저작권 침해는 범죄행위, 새로운 문제로 부각

전자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막대한 자본과 정열을 투자해 만든 창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정보 도둑이 활개치는 동안 전자출판 시장은 얼어붙고 있다. 전자출판물 전문 유통업체 E포인트 김형주 부장은 "저작권 침해를 막지 못하면 전자출판의 미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저작권자 및 정보제공권자 스스로 권익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 무단 복사·복제는 명백한 범죄행위

PC통신에 <슈퍼맨이었던 사나이>란 글을 올린 통신자가 유일헌씨는 《어느날 갑자기》란 제목으로 책까지 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 □방송사에서 《테마게임—슈퍼맨의 비애》로 방영됐다. 유씨는 PC통신물 저작권 수호와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10개월 간의 지루한 송사를 치렀다. 결국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했지만, 저자 스스로 권익 찾기에 나선 선례를 남겼다.

유씨처럼 통신에 올린 창작물이 무단으로 복제·표절당하는 사례는 빈번하다. 문학작품은 물론이고 학술논문, 일반정보까지 도용당하고 있다. 더욱 엄청난 투자비를 들여 만든 CD-롬 형태의 전자출판물까지 복제, 유통되고 있다. 6백만원짜리 《조선왕조실록》 CD-롬이 복제되어 고작 몇만원에 팔리고 관련 학자까지 사용하고 있어 이미 전자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벽은 없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다.

저작권 침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저작권법은 '권리의 침해죄(저작권법 제98조)'를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법규를 강화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명문화된 법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복사 천국'이란 국제적 오명을 듣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한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저작권자 개인의 침해 사례를 일일이 밝혀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

### 첨단·과학기술이 발달한 상황에서

### 사이버 공간의 저작권 침해사례를

### 일일이 밝혀내기란 사실상

### 거의 불가능하다. 미래의

### 전자출판물은 지식과 정보를

### 제공하는 주요 매체가 될 것이

### 분명한 만큼 디지털시대의

### 창의적인 정보와 지식에 대한

###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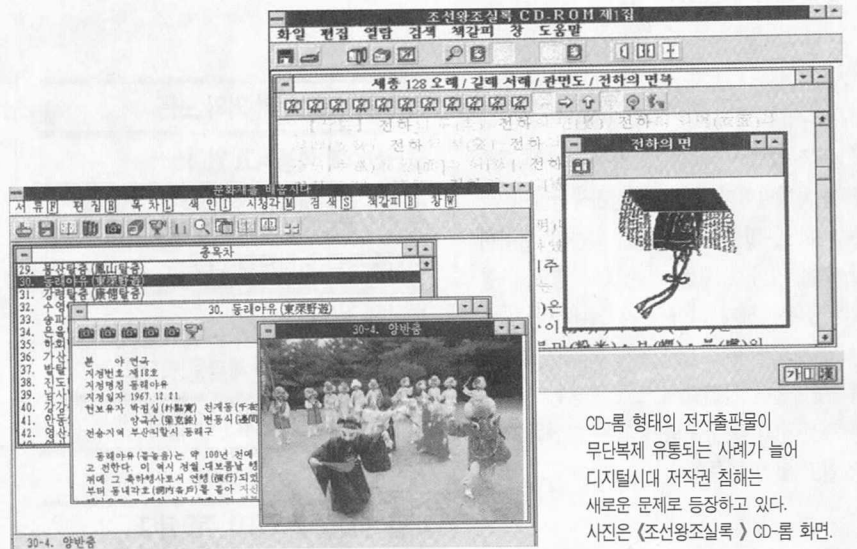
무단 복제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가운데 저작권자 스스로 권리를 찾기란 더욱 힘들다. 저작권 침해의 가장 큰 피해자인 통신작가들은 하이텔에 한국통신작가회(GO KOLW), 천리안에 컴퓨터 문단작가협회(GO JUOK)를 만들어 집단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집중관리제(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단체 등이 관리)를 도입하는 것도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 저작권자·이용자 인식 바뀔 때

전자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작권자 스스로 권익을 찾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은 "우리 사회는 복사·복제를 범죄행위로 보려는 의식이 없다.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리자가 권익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에도 한계가 있다. 공간의 벽을 뛰어넘어 지구촌을 넘나드는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 침해 사례를 개인이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 침해사례를 밝혀내도 보상을 청구하기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출판계 일각에서는 저작권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디지털 매체 자체가 쌍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자와 이용자의 경계가 무너져 출판 저작권에 디지털 관련 저작권을



CD-롬 형태의 전자출판물이 무단복제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 디지털시대 저작권 침해는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사진은 《조선왕조실록》 CD-롬 화면.

첨가하는 방식으로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쇄출판물에 대한 저작권과 전자출판물 저작권을 각각 만들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늘어날 미래에 전자출판물은 지식과 정보를 제

공하는 주요 매체로 부상하고 있다. 아직 전자출판물에 관한 한 맹아기에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창의적인 정보와 지식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중요한 선행과제다. 정보 도둑이 활개치는 사이버 공간에서 전자출판의 미래는 어둡기 때문이다. — 오완진 기자

## 정보독점 거부하는 '카피레프트' 운동

### 정보공유로 열린 공동체 지향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  
"정보의 독점을 거부한다!"

상업화를 겨냥한 저작권-카피라이트(copyright)에 맞서 새로운 개념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카피레프트(copyleft)'의 목소리가 최근들어 부쩍 잦아들었다. 카피라이트를 패러디한 이 용어는 저작물을 배포할 때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복사·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주는 것을 말한다. 이용자는 카피레프트된 저작물의 기능을 변형하여 다시 배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제공권자가 저작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 올려진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공유하고, 이를 새로운 정보로 재생산하여 더욱 풍요로운 정보의 바다를 꾸밀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업형 정보제공권자가 저작권의 상업화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정보망을 차단하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카피레프트의 출현으로 정보제공권자와 이

용자 사이에 가로놓인 벽이 허물어질 것인가. 미국 자유소프트웨어재단 설립자 리처드 스톨먼은 "작가나 출판업자에게 저작권이 중요한 것처럼 독자에게는 읽을 권리가 중요하다.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미래의 사이버 사회는 열린 공동체는커녕 지금보다 더욱 폐쇄적인 불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사이버 시대에 저작권을 강화하는 것은 정보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이용자는 정보를 재생산할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셈이다.

정보제공권자의 입장에 선 나라일수록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저작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미국의 출판업계는 디지털공간의 저작권을 현실공간의 저작권보다 강화하려고 끊임 없이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의회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통과시켜 개인이 사들인 소프트웨어를 다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수정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카피레프트의 움직임은 정보공유의 가능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오완진>